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정원	종사자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한내로 69-15, 2층 (금천한내복지관 내)	386.94㎡ (작업시설) 46.86㎡ (지하창고)	30명	5명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 이용표)

나) 위탁기간 : 2020. 8. 20.~2025. 8. 19. (최초위탁 : 2012. 8. 20.)

다) 운영인력 : 총 5명

라) 운영예산 : 307,207천원(2024년 기준)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5. 8. 20.~2030. 8. 19.)

2) 위탁내용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 전반

가) 위탁 대상 시설의 재산관리

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

3. 재위탁 사유

- 가.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 또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임.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수탁자 적격자선정 심사를 거쳐 금천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이하의 위촉직 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 민간위탁총괄 담당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